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고단662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6625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여, 24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사진 2장을 송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8. 22:45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빨고싶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 1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일시	범행방법
1	2019. 6. 18. 22:45경	"빨고싶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2	2019. 6. 18. 22:47경	"꼭찌빨아두되?, 꼭지빨아도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 지 전송
3	2019. 6. 18. 22:48경	"보고싶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4	2019. 6. 18. 22:50경	피해자의 가슴사진 전송 후 "빨고싶네 이정도면 C아님? 죡나커보이는데"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5	2019. 6. 18. 23:23경	"니몸 섹시하잖아 키스해줘 입으로 해줘 뽀뽀해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6	2019. 6. 18. 23:39경	"나랑하루보내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7	2019. 6. 19. 14:47경	"오늘봐도 섹시하네 사진 타고낫네"라는 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전송
8	2019. 6. 19. 19:11경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전송 후 "왼쪽원은 큰데 오른쪽은 좀작네 유륜이 왼쪽은 약간빨갛고 오른쪽은 연갈색 싱 기"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같은 날 23:21경"그럼딴사진줘 지울게", 같은 날 23:29 경 "니가 지금 연락하는 애들의 내 친구나 동생이 4명이 있음 커 차단해라", 같은 날 23:34경 "치킨보내라고 맛잇는걸로", 2019. 6. 19. 17:34경 "커피한잔하던지 술이나", 같은 날 17:35경 "후회할수도있는데후회안하 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보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카톡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보내 준 가슴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관계에 있어 경솔하게도 피해자의 반응을 가벼이 받아들인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